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시스템 결과물 표시 훼손·위조·변조 제재〉
■ 이상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04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시스템 결과물 표시 훼손·위조·변조 제재 (안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상회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12.

다. 회 부 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규정이 없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존재함.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시스템 결과물 표시 훼손·위조·변조 제재(안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과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 안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안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3조(과태료) ① -----

현행	개정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u> <u>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u> <u>조한 자</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¹⁾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이른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²⁾하도록 하고 있음.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인공지능사업자가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중지·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³⁾함.
-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생성된 사진·영상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와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결과물임을 표시하더라도 이용자가 그 결과물을 유통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표시를 제거하거나 인식이 어려울 만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처벌 대상도 아닌 상황임.

2)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3)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표시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수시로 유통되고 그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표시가 변질·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표시 의무를 규정한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미 인공지능사업자가 표시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변형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없이 단순 과실로 훼손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와 위조·변조한 경우만을 제재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의 훼손, 위조, 변조 중 위조 및 변조는 행위자의 의도를 전제로 하나 훼손은 의도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의도하지 않는 훼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추가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시되는 경우 게시자가 생성물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임.
- 따라서,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디에 규정할지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대상의 포괄성으로 인해 콘텐츠 산업 등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하는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초기라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신규 규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업로드되는 과정에서 자동 압축되거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가 삭제되는 등 비의도적인 표시 변경 행위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어 금지·처벌 대상이 되는 훼손·위조·변조를 의도적인 행위로 한정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표시를 허용하는 만큼 개정안과 같이 표시의 훼손·위조·변조를 금지할 때도 예술적·창의적 표현 목적이 있는 경우 별개의 기준을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